

2022년 자산운용본부·리스크준법실 내부감사 결과

□ 감사개요 및 결과

- 감사기간 : '22.12. 5. ~ 12.23. (감사대상기간 : '20~감사일 현재)
- 감사범위 : 자산운용 및 리스크관리 전반, 컴플라이언스 업무 등
- 처분사항 : 주의(4), 통보(3), 개선(7), 권고(3)

□ 감사 지적 및 조치 요구사항

No	관계부서	제 목	주요지적 및 조치 요구사항	
1	투자전략실 공제기획실	자산운용위원회 관련 개선 필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노란우산 기준이율 심의에 따른 이해상충 문제 개선 → 공제사업본부에서 추진토록 개선 ○ 대체 비중이 낮은 멀티펀드를 대체 자산군으로 분류 → 자산군별 배분 계획 재수립 등 개선 	개선
2	투자전략실	멀티에셋펀드 등 자산운용 규정 정비 개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혼합형 상품에 대한 투자 프로세스 규정화 필요 ○ 멀티에셋펀드 현장실사 규정 준수 철저 	개선 통보
3	부서 전체	의결서 작성자 기명 필요	○ 의결서 작성자 기명 필요	개선
4	투자전략실	채권 재분류 조정 절차 개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채권 재분류* 관련 위임전결기준 보완 등 프로세스 마련 * 매도가능금융자산 ↔ 만기보유금융자산 	권고
5	투자전략실 기업투자부 리스크준법실	해외출장관리지침 미준수 (마일리지 변동 미보고)	○ 해외출장관리지침 미준수(마일리지 변동 미보고)	주의
6	리스크준법실	손절매 기준 개선 검토 필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손절매 기준*에 시장 지표 추가하는 방안 검토 * 현행 단일 기준(취득원가 대비 시장평가액 하락 정도) ○ 매도 보류 건에 대한 사후관리절차 마련 	권고 개선
7	리스크준법실	위탁운용사 거래한도 규정 신설	○ 위탁운용사 거래한도 규정 신설	개선
8	투자전략실 리스크준법실	통합자산운용시스템 구축시 검토 필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시스템 접근권한 최소화 및 주기적 점검 통제 대상자 조정 ○ 내부통제방식* 개선방안 마련 * 현 직원의 자발적 신고에 의존 	통보 권고